

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9일

신당제5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윤**	윤** 1969-06-2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4-04-29